

울산광역시의회 한시임기제공무원(의정업무 지원) 임용시험 공고

울산광역시의회 한시임기제공무원(의정업무 지원)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,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6년 8월 28일

울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인원

임용분야	임용직급	인원	근무 기간	근무 부서	담당업무
의정업무 지원	한시임기제 7호 <주 35시간>	1명	임용일 ~ '27. 6. 30.	총 무 담당관	◦ 의원 의정활동 지원 및 자료수집·정리, 문서작성 등 ◦ 대내외 유관부서기관 간 업무협조 지원 ◦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

※ 근무기간은 휴직자의 휴직 연장, 복직 등의 사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2. 근거법령

- 「지방공무원법」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
- 「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」

3. 응시자격(기준일: 최종시험예정일)

가. 공통요건
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/ 거주지 및 성별 제한없음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8. 12. 31. 이전 출생자)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
□ 「지방공무원법」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□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
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- 가. 「변호사법」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,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(유한),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
 - 나.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
 - 다. 「세무사법」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
 - 라.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
 - 마. 삭제 <2022. 1. 4.>
 - 바. 삭제 <2022. 1. 4.>
 - 사.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
 - 아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
 - 자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

나. 자격요건

임용분야	응시자격요건
의정업무 지원 (한시임기제 7호)	□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○ 학사학위 취득후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전문대학의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1년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국회, 지방의회, 공공기관*, 법인 등에서 비서업무 또는 일반행정업무 관련 근무경력 *공공기관 : 재정경제부 「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고시」

□ 기본사항

-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
-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

□ 경력의 범위

-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
 -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것
 -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불인정되며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
- '경력'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,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
- 전임 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고,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(주 40시간 기준)
 - 전임(상근, 주40시간 근무) 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
 -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
-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,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
- '경력' 요건의 경력 계산 시 '공무원경력'과 '민간경력'을 합산할 수 없음
(예시) 관련분야 실무경력 '공무원(임용예정계급상당) 경력 1년'과 '민간경력 2년'을 합산하여 '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'으로 인정되지 않음

4. 보수 수준

임용직급	근무시간	봉급기준액(월) (주 40시간 기준)	주35시간 환산 봉급액(월)
한시임기제 7호	주 35시간 (1일 7시간, 주5일)	2,548,800원	2,230,200원
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29조의4(한시임기제의 봉급월액) 적용하되,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
- 기타 수당은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
-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제1항제3호 및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. 시험방법

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*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*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관련분야 경력, 근무경력 직무연관성 등 심사

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4조에 따른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평정요소를 상·중·하로 종합평가
 - (평정요소)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
- (불합격 기준)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'하'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'하'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

6. 시험일정

구 분	시 험 일 정
시험공고	'26. 8. 28.(금) ~ 9. 7.(월)
응시원서 접수	'26. 9. 8.(화) ~ 9. 10.(목)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'26. 9. 23.(수) 예정
면접시험	'26. 9. 30.(수) 예정
최종합격자 발표	'26. 10. 7.(수) 예정

-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상황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(<https://www.council.ulsan.kr>) '의회소식 - 고시/공고'란에 게재
-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7. 응시원서 접수

- 가. 원서교부 :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council.ulsan.kr>)
 “의회소식 - 고시/공고”란 해당 공고의 제출서식 다운로드
- 나. 접수기간 : '26. 9. 8.(화) ~ 9. 10.(목) 09:00 ~ 18:00(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)
- 다. 접 수 처 : 울산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 인사교육팀(시의회 3층)
- 라. 접수방법 :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(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 가능)

◆ 등기우편주소 : (우)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(신정동), 울산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
 인사교육팀 채용담당자(052-229-5182)

- 등기우편 접수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(☎052-229-5182) 유선으로 통보 바람

※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, 등기우편 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(응시 수수료)를 동봉하시기 바랍니다. *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능

※ 우편접수의 경우 “응시번호”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SMS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
 “응시표”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본인확인(신분증 대조) 후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

8. 제출서류

※ 제출서류 편철 시, 스테이플러, 양면인쇄 사용금지

구 분	내 용
1. 제출서류 목록표 1부 (별지서식 제1호) : 필수	○ 제출여부 항목에 'O' 표시
2. 응시원서 1부 (별지서식 제2호) : 필수	○ 응시수수료 : (7급) 7,000원 수입증지 부착 -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첨부(구입처 : 울산시청 본관 1층 경남은행) - 우편접수 시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 금액의 '통상환증서' 구입하여 동봉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
3. 이력서 1부 (별지서식 제3호) : 필수	○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 - 증빙서류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
4. 자기소개서 1부 (별지서식 제4호) : 필수	○ A4 2매 이내로 작성

구 분	내 용
5. 직무수행계획서 1부 (별지서식 제5호) : 필수	○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+ A4 3매로 작성(총 4매 이내)
6.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(별지서식 제6호) : 필수	○ 해당 사항만 작성
7. 졸업(학위)증명서 1부 : 필수	○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(인터넷 증명서는 3개월 이내) 발행분 제출 ○ 대학교(전문학사) 이상은 대학교, 대학원 졸업(학위)증명서 모두 제출 ○ 석·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 논문요약서 1부 제출 <별지서식 제6호> - 논문 표지 및 목차, 서론 사본 각 1부(논문명, 지도교수명, 학위자명 등 명시) ○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○ 해외 학위의 경우 반드시 번역문(공증필) 첨부 - 필요시 최종합격자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제출
8. 경력(재직) 증명서 1부 : 필수	○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○ 증명서에는 근무기간·부서·직책·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, 발급기관 직인 날인 및 발급담당자 성명·연락처 반드시 기재 ※ 임용 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,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(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를 첨부하여야 함. ○ 주 40시간 전일 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○ 법인 및 단체에서 근무한 경우 증빙 서류 첨부(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) ○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,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(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로 보완 가능 - 보완서류 외 '폐업사실확인서', '4대보험 자격득실이력 확인서' 및 '소득금액증명서'를 추가로 필수 제출하여야함. ○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(담당업무 미기재 등)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,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○ 경력증명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참고 서식 활용
9.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: 필수	○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-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○ 근무경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서, 근로계약서,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경력이 인정될 수 있음 ○ (해당자에 한함) 폐업자 정보 사실 증명서 1부 -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, 국세청의 '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' 추가 제출
10.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(별지서식 제7호) : 필수	○ 자필 서명 필수

구 분	내 용
11.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 1부 (별지서식 제8호) : 필수	○ 자필 서명 필수
12. 주민등록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(별지서식 제9호) : 필수	○ 남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, 병역사항 포함 ○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제출 시, 자필 서명 필수
13.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 및 직무성과 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: 해당자에 한함	○ 직무와 관련된 수상·상훈 실적, 연구실적, 어학능력, 관련분야 자격증 등 ○ 연구논문은 논문표지 및 제목, 발표자가 표시된 페이지 사본 제출

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위, 경력증명서, 논문 등)의 경우, 반드시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하여 제출

9. 안내 및 유의사항

-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 -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,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)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. 단,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.
- ※ 원본 제출된 증명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
-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,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(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포함)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, 허위사실 기재, 증명서 위조,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83조,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5장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장, 「형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영에 의한 시험, 그 밖의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, 「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」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시의회 채용담당자(052-229-5182)에게 문의 바랍니다.